

포상금 지급기준 (제91조의2제3항 관련)

유출물질 \ 포상금액		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	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	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	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	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	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	5만원
기름	중질유	3,000 ℓ 이상	2,000 ℓ 이상 3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2,000 ℓ 미만	500 ℓ 이상 1,000 ℓ 미만	50 ℓ 이상 500 ℓ 미만	5 ℓ 이상 50 ℓ 미만	5 ℓ 미만
	경질유	5,000 ℓ 이상	3,000 ℓ 이상 5,000 ℓ 미만	2,000 ℓ 이상 3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2,000 ℓ 미만	100 ℓ 이상 1,000 ℓ 미만	10 ℓ 이상 100 ℓ 미만	10 ℓ 미만
	선저폐수						1000 ℓ 이상	1000 ℓ 미만
해양배출폐기물 (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)			10톤 이상	5톤 이상 10톤 미만	3톤 이상 5톤 미만	1톤 이상 3톤 미만	0.5톤 이상 1톤 미만	0.5톤 미만
폐기물	수은 및 그 화합물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납 및 그 화합물, 비소 및 그 화합물, 구리 및 그 화합물, 크롬 및 그 화합물, 아연 및 그 화합물, 폴리염화비페닐, 6가크롬화합물, 유기할로겐화합물, 시안화합물, 유기인화합물, 불화물, 페놀류, 트리클로로에틸렌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유기실리콘 화합물, 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분자 화합물, 폐산, 폐알칼리			10톤 이상	5톤 이상 10톤 미만	1톤 이상 5톤 미만	0.5톤 이상 1톤 미만	0.5톤 미만
	동식물성고형물, 분뇨,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			25톤 이상	15톤 이상 25톤 미만	10톤 이상 15톤 미만	5톤 이상 10톤 미만	5톤 미만
유해액체물질	알라클로르, 알칸,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			10,000 ℓ 이상	5,000 ℓ 이상 10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5,000 ℓ 미만	500 ℓ 이상 1,000 ℓ 미만	500 ℓ 미만
	아세톤, 시아노히드린, 아크릴산, 아세트산, 아세트산 무수물,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, Z류 물질			25,000 ℓ 이상	15,000 ℓ 이상 25,000 ℓ 미만	5,000 ℓ 이상 15,000 ℓ 미만	1,000 ℓ 이상 5,000 ℓ 미만	1,000 ℓ 미만
	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						10 ℓ 이상	10 ℓ 미만

비고

1. 범죄의 경중,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.
2. 중질유란 원유, 병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, 경질유란 경유, 등유,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.